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796호 2021. 3. 24(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 조 례

제2629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2630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제2631호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 .....	14
제2632호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고 시

제2021-43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8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제2021-46호 거창군 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0
제2021-49호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32
제2021-51호 가조면 기리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승인 고시 .....	34
제2021-5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36
제2021-53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지정 고시 .....	38
제2021-54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고시 .....	39
제2021-55호 도로명주소 고시 .....	40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1년 3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29호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u>“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p>
<p>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u>제8조(준용)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절차,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

나. 관련 조문

1) 안 제6조제4항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결과

지원액 \ 연도	2021년도
군비	120백만원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지원대상: 거창군 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 지역예술인

나. 사업비: 120명 x 1백만원 = 12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정 상 준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4
----------	---------

제출연월일	2021. 2. 2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그들의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극복과 지역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역예술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그 예술 활동이 증명되는 사람

나.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4항)  
다.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9조)

- 1) 준용: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조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2)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 재기재로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2) 「예술인복지법」 제2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1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3.~2. 15.(「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1년 3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30호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6조(지원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20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 4.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이 병 주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4
----------	---------

제출연월일	2021. 2. 2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게 지원하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변경)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나. 주택용 소방시설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1) 전 군민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2)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

#### 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1) 지원대상: (현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 (변경) 거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2) 우선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사는노인 등

#### 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6조)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마. 지원신청, 지원결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 29.~2.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  
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1년 3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31호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21-13
----------	---------

제출연월일	2021. 2. 2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폐지이유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들에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정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2013. 9. 25.)·시행하였으나,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가 완료(2016. 8.)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 3. 30)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완화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정책 결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나.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 19.~2.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1년 3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32호

###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급기준) 여비는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 15만원을 지급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제13조(지급기준) 여비는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한다.</u></p>	<p><u>제13조(지급기준) 여비는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 15만원을 지급한다.</u></p>

[별표] <삭 제>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구분(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 지급표 상의 부군수 상당액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2
----------	---------

발의일자	2021. 1. 12.
발 의 자	심재수, 김종두, 최정환, 권재경, 이재운, 신재화, 표주숙,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권순모 의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회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결원 발생 시 대처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결산검사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하고,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을 위해 일비를 증액함

2.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위원 결원 발생 시 선임 방법 신설(안 제3조제5항)
- 나. 결산검사위원 일비 증액(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나. 예산조치: 결산검사위원 일비 증액분 예산 반영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2. 25.~3. 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8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7-105(2017.08.24.)호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86, 2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 03. 18.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군 계 획 시 설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제	개명	소로	2	286	346	9.5~11	10,552	고제면 개명리 2026-1번지 ~ 2070번지 고제면 개명리 산19-17번지 ~ 2040-1번지	거창군고시 제2017-105호 (2017.8.24.)	실시계획 인가일 ~ 2022.12.31.
						2	287	225	9,84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소로 2-28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2,152	10,552					
1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135		국(건설부)			
2	고제면 개명리	2026-4	전	1,741	1,741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19-34	임	2,034	2,034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82-2	전	58	5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3	임	887	887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2270	도	3,160	194		국(건설부)			
7	고제면 개명리	2063-3	전	2,000	2,000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20-11	임	1,362	1,362		거창군			
9	고제면 개명리	2073-4	전	433	338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073-6	전	121	64		거창군			
11	고제면 개명리	2074	전	357	134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20-13	임	534	534		거창군			
13	고제면 개명리	2072	임	393	19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268	구	14,344	305		국(농수산부)			
15	고제면 개명리	2046-9	전	72	72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71	답	261	261		거창군			
17	고제면 개명리	2070	대	238	238		거창군			

○ 소로 2-28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8,443	9,841					
1	고제면 개명리	2038	전	1,050	1,050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40-1	도	947	352		국(건설부)			
3	고제면 개명리	2039-1	도	7	7		국(건설부)			
4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2,681		국(건설부)			
5	고제면 개명리	산19-38	임	1,576	1,576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6	고제면 개명리	산19-39	임	73	73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7	고제면 개명리	2037-1	전	131	13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8	고제면 개명리	2037-4	전	339	339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9	고제면 개명리	산19-36	임	2,985	2,985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269	도	512	30		국(건설부)			
11	고제면 개명리	2027	도	1,531	153		국(건설부)			
12	고제면 개명리	산19-17	도	1,487	341		국(건설부)			
13	고제면 개명리	2031-5	임	25	2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031-6	과	10	10		거창군			
15	고제면 개명리	2030-11	전	29	7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30-7	도	17	10		국(국토해양부)			
17	고제면 개명리	2030-8	도	251	6		국(국토해양부)			
18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65		국(건설부)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28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사업 추진에 따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86, 2-2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  
획 인가합니다.

2021년 03월 18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군 계 획 시 설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제	개명	소로	2	286	346	9.5~ 11	10,552	고제면 개명리 2026-1번지 ~ 2070번지	거창군고시 제2017-105호 (2017.8.24.)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2	287	225	9.5~ 11	9,841	고제면 개명리 산19-17번지 ~ 2040-1번지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5. 인가조건 : 붙임

### 【 실시계획 인가조건 】

#### □ 공통사항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도서와 같이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중 사업계획 변경사항(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등) 발생 시에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1항의 건축부분 의제(협의)에 대하여는 별도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등을 득한 후 사업시행토록 하여야 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며, 사전재해예방 대책수립과 재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중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및 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복구, 조치, 해결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의견사항 및 협의(이행)조건에 대하여는 기재출한 조치(이행)계획서를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타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군계획시설사업 완료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조서, 설계도서 및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조건사항 및 감독처분, 행정사항 미 이행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공사의 중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인가, 협의, 승인 등에 따른 인가조건을 준수(이행)하여야함.

※ 경찰서 의견에 대한 일부반영 부분은 사업시행시 별도 협의 후 추진바람.



# 『배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개설공사』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행복나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묘 발견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 시 분묘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음</li> </ul>	반영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지와 공유지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기관 또는 해당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면적만 편입되는 사업부지는 자투리땅 등 사후 관리를 위하여 토지분할하여 사업추진하시고</li> <li>○ 사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시 근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소멸한 후 취득하여야 하며, 공유지분 토지는 소유권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유지 등 신규 취득되는 재산의 경우 경우 반드시 재산관리대장에 등록(새울 내 공유재산 시스템_e호조연계) 하시고,</li> <li>○ 토지 이동 사항 등은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지목변경, 합병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u>새울 공유재산대장에도 반영(수정 및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li> <li>※ e호조 자산취득시, 반드시 필지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되는 국유지와 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li> <li>○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준공 시 토지 정리를 하겠음</li> <li>○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겠음</li> <li>○ 사유지의 취득 시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겠음</li> <li>○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준공 시 토지 이동 등 정리하겠으며, 공유재산대장에 반영하겠음</li> </ul>	일부반영
안전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행령 별표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면적합계가 A=5,000㎡로서 <b>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음</li> </ul>	일부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거창경찰서와 협의 후 추진 바람</li> <li>○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서와 협의 후 추진하겠음</li> <li>○ 주차장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하겠음</li> </ul>	일부반영
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겠음</li> </ul>	반영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협의 산림과-18222(2019.10.22.)호</li> </ul>	반영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생산관리지역 7,500㎡, 농림지역 7,500㎡,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이상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당해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8435호 (2019.12.10)</li> </ul>	반영
건설과	<p>[도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규칙에따라 국도 37호선 연결 관련하여 가감속차로와 테이퍼가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길이와 관련한 규정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연결규칙 6조를 포함 다른 조항들을 확인한 다음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함.</li> </ul> <p>[국유재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무상으로 귀속됨. 단 공공시설외 부지는 제외 됨.</li> <li>○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7호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관리청 허가 득함</li> <li>○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음</li> </ul>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관련하여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을 위해서는 조달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도시건축과	[농지법] ○ 농지전용 협의	○ 농지전용 협의 완료  [도시건축과-46862호(2019.10.28)]	반영
경찰서	○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표시된 직·좌·우 진행 방향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근거하여 존재하지 않는 노면표시로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직·좌 진행방향 노면표시(538)를 설치하여 주시고, 교차로 내 위치한 각 방면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본 표지(322)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일부반영
한국농어촌공사	○ 의견 없음(공사관리시설 없음)	○ 해당없음	반영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 소로 2-28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2,152	10,552					
1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135		국(건설부)			
2	고제면 개명리	2026-4	전	1,741	1,741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19-34	임	2,034	2,034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82-2	전	58	5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3	임	887	887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2270	도	3,160	194		국(건설부)			
7	고제면 개명리	2063-3	전	2,000	2,000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20-11	임	1,362	1,362		거창군			
9	고제면 개명리	2073-4	전	433	338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073-6	전	121	64		거창군			
11	고제면 개명리	2074	전	357	134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20-13	임	534	534		거창군			
13	고제면 개명리	2072	임	393	19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268	구	14,344	305		국(농수산부)			
15	고제면 개명리	2046-9	전	72	72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71	답	261	261		거창군			
17	고제면 개명리	2070	대	238	238		거창군			

○ 소로 2-28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8,443	9,841					
1	고제면 개명리	2038	전	1,050	1,050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40-1	도	947	352		국(건설부)			
3	고제면 개명리	2039-1	도	7	7		국(건설부)			
4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2,681		국(건설부)			
5	고제면 개명리	산19-38	임	1,576	1,576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6	고제면 개명리	산19-39	임	73	73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7	고제면 개명리	2037-1	전	131	13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8	고제면 개명리	2037-4	전	339	339	경남 함양군 안의면 매바위길 3	이규원			
9	고제면 개명리	산19-36	임	2,985	2,985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269	도	512	30		국(건설부)			
11	고제면 개명리	2027	도	1,531	153		국(건설부)			
12	고제면 개명리	산19-17	도	1,487	341		국(건설부)			
13	고제면 개명리	2031-5	임	25	25		거창군			
14	고제면 개명리	2031-6	과	10	10		거창군			
15	고제면 개명리	2030-11	전	29	7		거창군			

16	고제면 개명리	2030-7	도	17	10		국(국토해양부)			
17	고제면 개명리	2030-8	도	251	6		국(국토해양부)			
18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4,157	65		국(건설부)			

●거창군 고시 제2021-46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8일

거창군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거창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거창읍 양평리 290-1 일원	40,080	감)112	39,968	경고43호('85.3.11)	경미한 변경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거창하수종말처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A=40,080m<sup>2</sup></li> <li>- 변경 : A=39,968m<sup>2</sup> (감112m<sup>2</sup>)</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측량에 따른 변경된 면적 반영</li> </ul>

2. 관계 도면 : 실음생략

3. 거창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9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 명칭 : 거창하수종말처리장

다. 사업규모 : A=38,032m<sup>2</sup>, 처리시설 V=19,000m<sup>3</sup>/일(기존 14,000m<sup>3</sup>/일, 증설5,000m<sup>3</sup>/일)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5,744	38,032					
1	거창읍 양평리	1239-121	도	57	57		거창군			
2	거창읍 양평리	1248-2	구	1	1		거창군			
3	거창읍 양평리	346	천	68	68		거창군			
4	거창읍 양평리	290-1	잡	37,399	36,557		거창군			
5	거창읍 양평리	289-1	전	665	8		거창군			
6	거창읍 양평리	294-3	과	2,862	119		거창군			
7	거창읍 양평리	296-6	과	180	180		거창군			
8	거창읍 양평리	산160-15	임	628	628		거창군			
9	거창읍 양평리	1239-142	천	52	52		거창군			
10	거창읍 양평리	1239-117	잡	3,483	13		거창군			
11	거창읍 양평리	296-4	대	320	320		거창군			
12	거창읍 양평리	294-4	과	18	18		거창군			
13	거창읍 양평리	1240	잡	11	11		거창군			

거창군 고시 제2021 - 49호

##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59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 82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웅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문화·복지 공간 개선을 통한 문화활동 증가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활성화,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경상남도의 대표적 브랜드 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
3. 사업비 : 1,0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 단노을 공동급식소 신축
    - 지역역량강화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컨설팅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21 3. ~ 2022. 12.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940-8273)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토지》 응양면 오산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단노 을 공동 급식 소 신축	1	응양	한기	915		학교용 지	12,468	14,562	경상남도교육청		거창군 매입 예정
	2	응양	한기	923	1	학교용 지	1,734		경상남도교육청		
	3	응양	한기	923	13	학교용 지	90		경상남도교육청		
	4	응양	한기	1043	4	도로	232		경상남도교육청		
	5	응양	한기	452	3	답	38		경상남도교육청		
계							14,562	14,562			

거창군 고시 제2021 - 51호

## 가조면 기리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가조면 기리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가조면 기리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문화·복지 공간 개선을 통한 문화활동 증가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활성화,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경상남도의 대표적 브랜드 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
3. 사업비 : 1,0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 Green 문화센터조성, Green 기리마을 안심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마을공동체 경관조성 교육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21 3. ~ 2022. 12.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940-8273)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토지》 가조면 기리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Green 문화 센터 조성	1	가조	기	535	1	학교용지	15,070	14,811	경상남도교육청		거창군 매입 예정
	2	가조	기	538	1	전	387	387	경상남도교육청		
	3	가조	기	545	1	대	992	992	경상남도교육청		
	4	가조	기	549	2	대	1,398	1,398	경상남도교육청		
	5	가조	기	549	3	대	239	239	거창군		
계							18,086	17,827			

●거창군 고시 제2021-5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24일

거창군수

1.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47번지 일원	303,722m <sup>2</sup>	※ 구적상 면적으로 실제 측량 면적과 달라 질 수 있음.

2. 제한사유 :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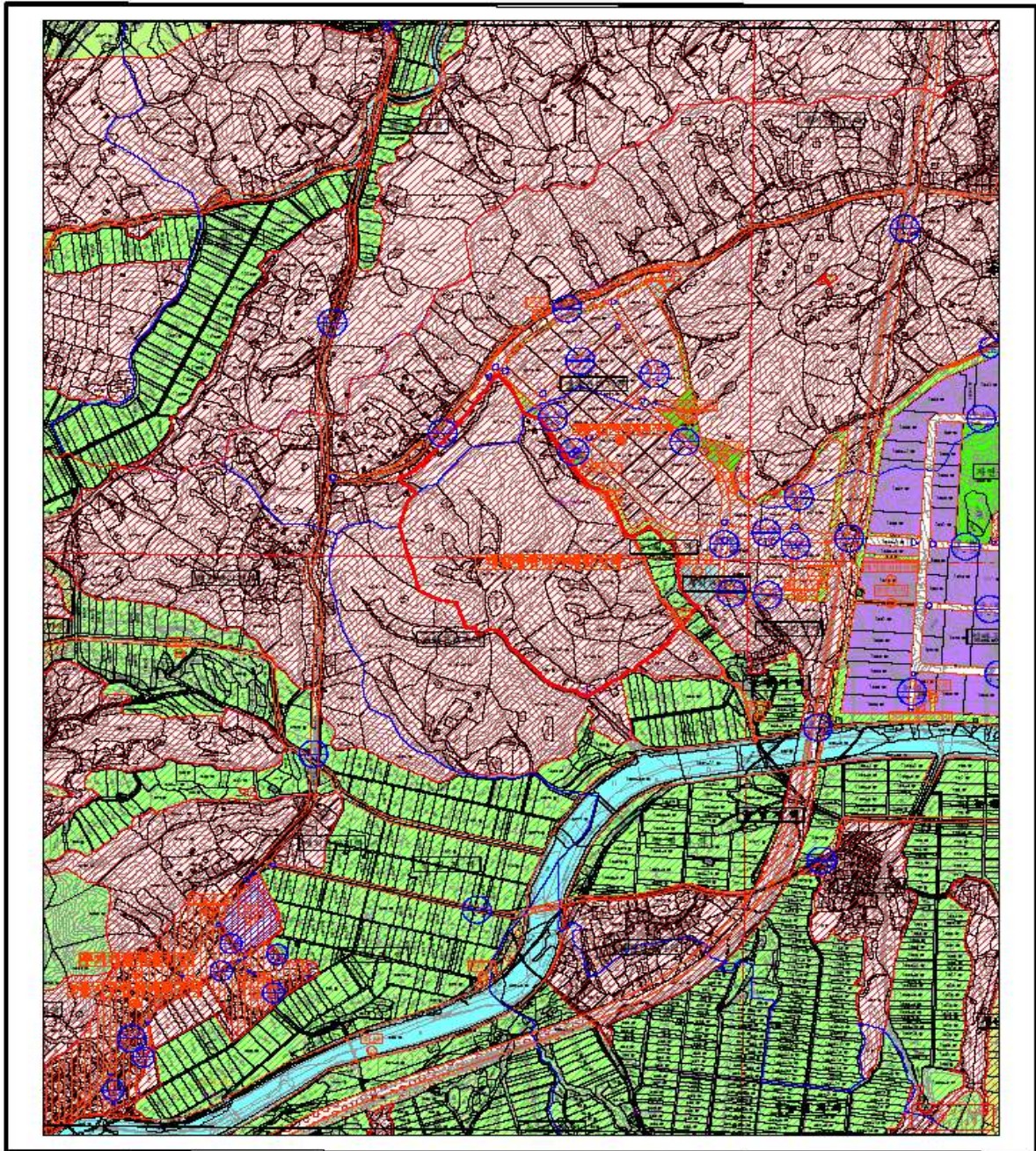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거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축척 1:8,000



단위: 미터



## 법칙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농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생산농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농지지역
	안수거지역		보전산림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산림지역
	일반주거지역		계획산림지역
	향유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정일자	제정일자
제정일자	2021년 09월 09일
고시번호	2021년 09월 09일
고시번호	거창발 고시 제2021-0002
작성과	(무)진과
작성일월일	2021년 09월 09일
제정인승용도인명사	거창발

거창발 고시 제2021-0002  
 시 기 2021년 09월 09일  
 민방 및 산림 부문에 한하여 무효함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지정 하였기에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24.

# 거창군수

### 1. 수탁기관의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사)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조정철	609-82-162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6번길 1	

2. 위탁사무 :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3. 위탁기간 : 2021. 3. 23. ~ 2024. 3. 22. (3년)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지정 하였기에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24.

# 거창군수

### 1. 수탁기관의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사)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조정철	609-82-162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6번길 1	

2. 위탁사무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3. 위탁기간 : 2021. 3. 23. ~ 2024. 3. 22. (3년)

4. 검사지역 : 거창군 전 지역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2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587-9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222-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587-9	20210324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18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182	20210324	20090702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585-10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촌1길 163	20210324	20090401	1550년께 하빈이씨가 열었다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808, 808-1, 808-2, 80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조금실길 150	20210324	20090401	조금실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840-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중앙농로길 199	20210324	20090401	예로부터 불려져 내려오는 기존 도로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0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50	20210324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부여

## 거창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4.

### 거 창 군 수

####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① 공공청사

#####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	거창지청	공공청사	거창읍 상림리 산23 일원	21,270	1,220	22,490	경고 제2016-73호 (2016.3.3.)	
변경	9	거창지원	공공청사	거창읍 가지리 1343-7 일원	22,180	감)2,060	20,120	경고 제2016-73호 (2016.3.3.)	

##### ○ 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용도 : 공공업무시설</li> <li>• 부대, 편익시설</li> <li>-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li> </ul>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거창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변경</li> <li>• 위치 : 거창읍 상림리 산25-7 일원 → 거창읍 상림리 산23 일원</li> <li>• 면적 : 21,270㎡ → 22,490㎡(증 1,2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의 진입 도로를 거창구치소 진입도로와 일치시켜 교통 안전성 향상 및 법조타운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청사 위치를 변경</li> </ul>
9	거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변경</li> <li>• 위치 : 거창읍 상림리 412-4 일원 → 거창읍 가지리 1343-7 일원</li> <li>• 면적 : 22,180㎡ → 20,120㎡(감 2,060㎡)</li> </ul>	

② 군계획도로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48	15	국 지 도로	200	중1-16	중2-13	일반 도로	-	거창군 제2016-26호 (2016.3.3.)	
신설	중로	2	A	15	국 지 도로	377	중1-16	소1-75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류 48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폐지</li> <li>• 위치 : 거창읍 상림리 산21-4일원</li> <li>• 규모 : 폭원 15m, 연장 20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의 위치변경에 따라 기존 진출입로를 폐지함</li> </ul>
-	중로2류 A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신설</li> <li>• 위치 : 거창읍 상림리 410-4일원</li> <li>• 규모 : 폭원 15m, 연장 37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를 위해 노선을 신설함</li> </ul>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055-940-3593, FAX 055-940-3579)

#### 4.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50132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 【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공청사 8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계	-	-	-	-	49,126	22,490			
1	거창읍 가지리	1345	13	전	167	16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남도○○재단	
2	거창읍 가지리	1345	14	전	193	19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남도○○재단	
3	거창읍 가지리	1345	22	전	55	55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	23	전	75	75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45	24	전	1,037	1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남도○○재단	
6	거창읍 가지리	1345	25	전	128	5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박○자	
7	거창읍 가지리	1345	26	전	105	23	-	거창군	
8	거창읍 가지리	1345	36	전	606	32	-	거창군	
9	거창읍 가지리	1345	37	전	978	60	-	거창군	
10	거창읍 가지리	1345	38	전	488	25	-	거창군	
11	거창읍 가지리	1345	39	전	319	3	-	거창군	
12	거창읍 가지리	1345	43	전	46	46	-	거창군	
13	거창읍 가지리	1345	44	전	848	848	-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1345	45	전	3,092	3,092	-	거창군	
15	거창읍 가지리	1345	46	전	153	1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박○자	
16	거창읍 가지리	1345	47	전	154	154	-	거창군	
17	거창읍 가지리	1345	48	전	1	1	-	거창군	
18	거창읍 가지리	1345	49	전	10	10	-	거창군	
19	거창읍 가지리	1345	50	전	31	28	-	거창군	
20	거창읍 가지리	1354	1	임야	449	44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남도○○재단	
21	거창읍 가지리	1354	12	임야	199	8	-	거창군	
22	거창읍 가지리	1354	17	임야	85	85	-	거창군	
23	거창읍 가지리	1354	18	임야	83	21	-	거창군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24	거창읍 가지리	1354	19	임야	104	3	-	거창군	
25	거창읍 가지리	1354	21	임야	11	11	-	거창군	
26	거창읍 가지리	1354	22	임야	1,480	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27	거창읍 가지리	1354	23	임야	3,447	3,447	-	거창군	
28	거창읍 상림리	410	4	전	2,895	16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장○수	
29	거창읍 상림리	410	5	전	1,154	10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동3길 ○	박○수	
30	거창읍 상림리	410	7	전	1,160	632	-	거창군	
31	거창읍 상림리	410	8	전	261	261	-	거창군	
32	거창읍 상림리	412	1	전	2,511	5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	김○수	근저당 지상권
33	거창읍 상림리	412	3	전	397	11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산양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길 ○	박○영 지분(1/3) 오○자 지분(1/3) 박○진 지분(1/3)	
34	거창읍 상림리	412	4	전	161	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	김○선 지분(1/2) 박○호 지분(1/2)	
35	거창읍 상림리	412	7	전	1,770	1,254	-	거창군	
36	거창읍 상림리	412	9	전	6,622	5,8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	김○선 지분(1/2) 박○호 지분(1/2)	
37	거창읍 상림리	702	2	전	1,215	15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거창○씨참여 공과종중	
38	거창읍 상림리	702	6	전	121	5	-	거창군	
39	거창읍 상림리	703	6	전	1,445	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거창○씨참여 공과종중	
40	거창읍 상림리	산19	3	임야	2,288	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	김○선 지분(1/2) 박○호 지분(1/2)	
41	거창읍 상림리	산21	1	임야	397	367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산양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길 ○	박○영 지분(1/3) 오○자 지분(1/3) 박○진 지분(1/3)	
42	거창읍 상림리	산21	4	임야	1,869	1,29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산양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길 ○	박○영 지분(1/3) 오○자 지분(1/3) 박○진 지분(1/3)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3	거창읍 상림리	산21	9	임야	1,193	1,19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산양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길 ○	박○영 지분(1/3) 오○자 지분(1/3) 박○진 지분(1/3)	
44	거창읍 상림리	산22	0	임야	99	99	송정리	이원○무	
45	거창읍 상림리	산23	0	임야	298	298	송정리	이원○무	
46	거창읍 상림리	산25	7	임야	8,878	75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거창○씨참여 공과중중	
47	거창읍 상림리	산25	10	임야	48	48	-	거창군	

- 공공청사 9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계	-	-	-	-	34,621	20,120			
1	거창읍 가지리	1297	10	임야	1,430	173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23	18	전	595	276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36	8	전	532	49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김○두	근저당 지상권
4	거창읍 가지리	1336	9	전	347	34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김○두	근저당 지상권
5	거창읍 가지리	1342	0	과수원	1,339	1,0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	이○민	
6	거창읍 가지리	1343	0	전	565	5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	이○민	
7	거창읍 가지리	1343	2	전	248	24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장○수	
8	거창읍 가지리	1343	3	전	344	34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	주식회사○○ 종합건설	
9	거창읍 가지리	1343	4	전	1,408	1,36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	주식회사○○ 종합건설	
10	거창읍 가지리	1343	5	전	734	26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	주식회사○○ 종합건설	
11	거창읍 가지리	1343	6	전	3,354	3,0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	장○덕	
12	거창읍 가지리	1343	7	전	849	8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변○욱	
13	거창읍 가지리	1343	8	전	238	2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	이○민	
14	거창읍 가지리	1343	9	전	114	1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김○두	근저당 지상권
15	거창읍 가지리	1345	3	전	351	3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16	거창읍 가지리	1345	24	전	1,037	3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17	거창읍 가지리	1345	26	전	105	10	-	거창군	
18	거창읍 가지리	1345	28	전	985	98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제방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	윤○석 (지분 1/2) 서○여 (지분 1/2)	
19	거창읍 가지리	1345	35	전	52	50	-	거창군	
20	거창읍 가지리	1345	39	전	319	72	-	거창군	
21	거창읍 가지리	1345	40	전	79	79	-	거창군	
22	거창읍 가지리	1354	13	임야	124	124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제방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	윤종석 (지분 1/2) 서상여 (지분 1/2)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23	거창읍 가지리	1354	16	임야	959	221	-	거창군	
24	거창읍 가지리	1354	22	임야	1,480	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25	거창읍 가지리	산102	2	임야	595	59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	주식회사○○ 종합건설	
26	거창읍 가지리	산102	4	임야	893	6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	주식회사○○ 종합건설	
27	거창읍 가지리	산102	6	임야	1,091	2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	주식회사○○ 종합건설	
28	거창읍 가지리	산103	1	임야	992	9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장○수	
29	거창읍 가지리	산104	1	임야	1,006	4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	장○덕	
30	거창읍 가지리	산104	11	임야	4,078	1,03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김○두	근저당 지상권
31	거창읍 가지리	산104	12	임야	73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변○옥 (지분 1/2) 신○갑 (지분 1/2)	
32	거창읍 상림리	410	2	전	3,280	1,234	690	류○렬	
33	거창읍 상림리	410	3	전	549	47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미륵길 ○	최○정	
34	거창읍 상림리	410	4	전	2,895	1,7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장○수	
35	거창읍 상림리	410	5	전	1,154	40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동3길 ○	박○수	근저당 지상권
36	거창읍 상림리	410	0	전	377	5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미륵길 ○	최○정	
37	거창읍 상림리	753	0	도로	50	15	-	국(국토교통부)	

- 중로 2-A호선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계	-	-	-	-	21,404	5,761			
1	거창읍 가지리	1345	24	전	1,037	59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2	거창읍 가지리	1345	25	전	128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박○자	
3	거창읍 가지리	1345	26	전	105	72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	39	전	319	127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45	50	전	31	3	-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1354	22	임야	1,480	27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9번길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7	거창읍 상림리	408	1	도로	53	1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김○규	
8	거창읍 상림리	408	3	전	682	5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	김○두 (지분 1/2) 김○현 (지분 1/2)	근저당 지상권
9	거창읍 상림리	409	0	전	1,015	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	김○두 (지분 1/2) 김○현 (지분 1/2)	근저당 지상권
10	거창읍 상림리	409	1	전	2,007	6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길 ○	이○석 (지분 1/2) 이○화 (지분 1/2)	근저당 지상권
11	거창읍 상림리	410	0	전	377	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미륵길 ○	최○정	
12	거창읍 상림리	410	2	전	3,280	2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류○렬	근저당
13	거창읍 상림리	410	4	전	2,895	9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장○수	
14	거창읍 상림리	410	5	전	1,154	81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동3길 ○	박○수	근저당 지상권
15	거창읍 상림리	410	6	전	132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미륵길 ○	오○옥	
16	거창읍 상림리	411	0	전	2,069	673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	양○용 지분(3/50) 양○용 지분(2/50) (주제○○민 지분(45/50)	
17	거창읍 상림리	412	4	전	161	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	김○선 (지분 1/2) 박○호 (지분 1/2)	
18	거창읍 상림리	412	8	전	1,358	1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	김○선 (지분 1/2) 박○호 (지분 1/2)	
19	거창읍 상림리	754	0	구거	345	141	-	국(농수산부)	
20	거창읍 상림리	산15	1	임야	793	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류○협	
21	거창읍 상림리	산15	3	임야	1,983	4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류○협	

##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2. 제정이유 :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1)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나. 영양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2조)
    - 1) 목표 및 추진방향
    - 2) 세부 추진계획
    - 3)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영양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 다. 시행계획의 자문(안 제3조)
    - 1) 영양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필요한 자문
  - 라. 영양관리사업(안 제4조)

- 1) 특성 고려한 관리 및 지원
- 2) 지역사회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제공
- 4) 영양취약계층에 필요한 사업

마. 업무의 위탁(안 제5조)

- 1)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및 영양관리사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이나 식생활에 관한 전문성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6조)

- 1)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

4. 입법예고기간 : 2021. 3. 22. ~ 2021. 4. 11.(20일간)

5.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은 **2021. 4.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보건소(건강증진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4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전화 055-940-8323, 팩스 055-940-8309 또는 메일 jzccw1821@korea.kr)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전화 055-940-8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시행계획을 자문한다.

제4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나 영양관리사업 등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이나 식생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 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8.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20. 9. 12.] 제13조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76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양·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6. 식품의 영양과 안전